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관세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428호)
「관세법」·「관세사법」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 30.

다. 회 부 일 : 2024.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관세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현행	개정안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관세법」 제17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u>피한정후견인</u>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관세사 결격사유 (「관세사법」 제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u>피한정후견인</u>	☐ 관세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김도읍의원안 2024. 1. 30. 발의(의안번호 26428)

□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¹⁾ 운영인 등²⁾의 결격사유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관세법」 및 「관세사법」³⁾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을 각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결격사유와 관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대표적인 결격사유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이 있으며, 이 중 피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1)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함. 이 중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명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하며,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됨.

2) 참고로, 현행 「관세법」은 보세사, 보세운송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 자격 전반에 대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준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으로 결여(피성년후견인)되거나 부족(피한정후견인)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4).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음.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이 중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종전의 한정치산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4)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종전의 제도와 현행 제도의 차이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u>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u>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u>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u>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개정안은 「관세법」 및 「관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현행 「관세법」 및 「관세사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 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관세사 등의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개별 사안마다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특정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이와 관련하여 피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용어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등의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당사자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겠다는 피후견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일부 몰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세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역할의 전문성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타 전문자격사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의 경우 최근(2021.4.20.)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타 전문자격사법 사례]

구분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현행	개정안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X	X	○	○	○	○

IV. 입법의 재정영향

- ☐ 동 개정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함.

문 의 처
02)6788-5158